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34

제출연월일 : 2023년 8월 14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개정 이유

가. 조례 내 탈북학생 연령 규정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취학연령(만6세) 및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교육지원 대상의 상한연령(만25세미만)을 고려하여 만 나이 방식으로 규정

나. 만 나이 정착을 위한 「행정기본법」 개정(시행 ’23.6.28.)에 따른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(제7조의 2 신설)에 맞게 나이 관련 조례 정비 필요

2. 주요 내용

가. 탈북학생 연령 규정(만 나이 방식) 및 「행정기본법」 개정(시행’ 23.6.28.)에 따라 조례 내 **나이 표기에서 “만” 표시 삭제** (안 제2조)

- 만6세 이상 만25세 미만의 청소년 → 6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별첨 7

- o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3조(취학 의무)
- o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, 제24조(교육지원)
- o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5조(교육지원의 대상)
- o 「행정기본법」 제7조의 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)

다. 협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

o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 1

o 입법예고(2023. 6. 1. ~ 2023. 6. 21.) 결과: 의견 없음 (별첨 3)

o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o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 (별첨 4)

o 성별영향분석평가 :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 (별첨 5)

o 학생인권영향평가 : 권고사항 없음 (별첨 6)

o 관계법규 : 별첨 7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만6세 이상 만25세”을 “6세 이상 25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 1】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탈북학생”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의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. 2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 ----------6세 이상 25세----------. 2. (현행과 같음)

【별첨 2】

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서울틀벽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1항 제1호 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사업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 제출 제외

3. 미첨부 사유

○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탈북학생 연령 규정(만 나이 방식)과 「행정기본법」(시행 ’23.6.28.)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(제7조의 2 신설)에 따라 조례 내 나이 표기에서 “만”을 삭제하는 것으로, 표시 방식이 변경되었을 뿐 탈북학생 교육지원 관련 비용은 증가하지 않음

4. 작성자

-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행정6급 이지원(02-399-9469)

【별첨 3】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(제14조 관련)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	의견 없음 (이하 생략)	

【별첨 4】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(제9조제2항 관련)

자치법규명	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평 가 담 당	감사관	장학사	천주영
입안주무부서	민주시민생활교육과	**통보일**	2023. 6. 2.

관 련 조 문	검토결과	조치사항
안 전체	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」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탈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,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동 개정(안)의 주요 내용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「행정기본법」 개정안(시행 ’23.6.28.)에 따른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(제7조의 2 신설)에 맞게 나이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- 따라서, 동 개정(안)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가 목적이므로 부패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	**“원안동의”**

【별첨 5】

<table>
<tr><th colspan="5">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</th></tr>
<tr><td>관리번호</td><td colspan="4">2023A서울교육013</td></tr>
<tr><td>정 책 명</td><td colspan="4">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소관부서</td><td>기관명</td><td colspan="3">서울특별시교육청</td></tr>
<tr><td>부서명</td><td colspan="3">민주시민생활교육과</td></tr>
<tr><td>담당자명</td><td>이지원</td><td>전화번호</td><td>02-399-9469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담당부서</td><td>기관명</td><td colspan="3">서울특별시교육청</td></tr>
<tr><td>부서명</td><td colspan="3">민주시민생활교육과</td></tr>
<tr><td>담당자명</td><td>홍정미</td><td>전화번호</td><td>02-399-9675</td></tr>
<tr><td>체크리스트
제출일자</td><td colspan="4">2023년 05월 31일</td></tr>
<tr><td>완료(제외)
통보일자</td><td colspan="4">2023년 06월 02일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3년 06월 20일</td></tr>
</table>

【별첨 6】

자치법규 · 단위사업
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

자치법규 (단위사업)	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		
담당부서	민주시민생활교육과	담당자	직급	주무관	성명	이지원 (02-399-9469)
평가담당	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	위원장 마한얼				
해당조항	검토의견					검토결과
제2조(정의)	- 본 개정안은 탈북학생 연령 규정(만 나이 방식) 및 「행정기본법」개정안(시행'23.6.28.)에 따라 조례내 나이 표기에서 "만"표시 삭제하여, '만6세 이상 만25세 미만의 청소년'을 '6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'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. - 이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규정과 대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원안대로 동의합니다.					원안동의

【별첨 7】

관계법규

■ 초·중등교육법

제13조(취학 의무)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,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.

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.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.

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북한이탈주민”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“북한”이라 한다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.
2. “보호대상자”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.
3. ~ 4. (생략)

제24조(교육지원)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나이, 수학능력(修學能力),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전

문인력을 확보하고, 보호대상자의 학력 진단·평가, 교육정보관리, 교육,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5조(교육지원의 대상)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보호대상자로 한정한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-- (생략) -- 해당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만 2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
2. ~ 3. (생략)

■ 행정기본법

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